

“200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농정시책”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축산발전기금 대출 취급 기관	농협(조합 포함)과 농산물유통공사(수출입 관련 자금에 한함)를 통해 대출 취급	축산사업중 일부사업자금을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취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축계열화사업, LPC 등 경영안정자금 등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관계공무원 추가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 신설	<신설>	부정유통 단속 및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 신설
영업의 종류에 식육포장 처리업 신설	<신설>	식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하는 포장육을 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일반 축산물가공품보다 허가요건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업(시·도지사 허가)에서 분리하여 식육포장처리업(시·군·구청장 허가)을 신설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제도 도입	<신설>	자발적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위해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포상금 지급범위의 확대	밀도살, 가축 및 식육에 물주입 행위, 미검사품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부정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미허가영업자, 미신고영업자,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포상금 지급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가축의 종류를 일부 보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종류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12개 축종으로 함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종류를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당나귀로 하여 8개축종으로 함 -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삭제하고 당나귀를 추가 ※ 가축에서 제외되는 축종에 대하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별도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대상 영업자 추가	당해 작업장에서 영업자체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대상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대상 영업자에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를 추가함
위생교육대상자 추가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동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신설〉	소비자가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위해 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10월부터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8개 브랜드 내외)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신설〉	04.7.1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 B1+, A1, B1 등급을 판정받은 생산자에 대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지급금액 (한우) A1+, B1+ 등급 : 300천원 (한우) A1, B1 등급 : 200천원 (육우) A1+, B1+, A1, B1 등급 : 100천원 ※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p>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확대</p>	<p>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농어업인 중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22%에서 30%로 확대 지원</p> <p>-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p>	<p>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경감지원 농어업인 대상지역을 확대</p> <p>-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p> <p>-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p> <p>- 준농어촌지역</p> <p>위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 경감지원</p>
<p>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누락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p>	<p>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에 이장의 확인(1차) 및 읍·면장의 확인(2차)을 받아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p>	<p>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에 이(통)장의 확인(1차)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p>